

농발위 건의, 시책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윤석원 교수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우선정책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 평균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양적 성장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를 심화시켜 빈부간의 격차를 크게 하고 말았다. 이러한 와중에서 한국농축산업은 상대적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 농업노동력은 고령화·부녀화되어 양적인 감소는 물론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여 21세기 한국농축산업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있다. 그밖에도 한국 농촌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궤적한 정주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의 농민들은 기회만 있으면 농촌을 떠나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UR농산물 협상이 지난해(1993년) 12월 15일 잠정 타결됨으로써 모든 농축산물의 수입이 개방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수입개방이 확정된 사실 그 자체도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만 더욱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은 정

부의 안이하고 무능력한 협상태도였다.

정부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농어민단체들이 UR협상과정에서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소수의 관료들에 의한 밀실 행정으로 UR협상 대책을 처리해 왔다. 그러다 보니 UR협상에 참여한 11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참담한 결과를 감수해야 했다. 이제 우리의 농업·농촌·농민은 마치 조그만 목선을 타고 개방화라는 거대한 파도 속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UR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던 지난해 12월 대선기간중 발표했던 농정공약에 이어 '나의 신농정 구상'을 발표했다. 그 핵심 내용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그리고 떠나가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21세기 한국의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당위론적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농민들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이 크게 환영했다. 사실 이러한 대통령의 구상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국적으로 농정의 전면적인 개혁을 시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목표설정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구상과 대국민선언은 ‘농정의 개혁’을 약속한 것이기도 했으며 문민정부에 대한 신뢰감과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청와대 농수산담당 수석비서관 임명, 농어촌 특별세 신설, 농어촌발전위원회 구성 등 외형적인 것 외에 농정개혁의 조짐은 좀체로 찾아 보기 힘들다.

농정개혁의 시작은 거창하고 그럴 듯한 외형적인 기구와 제도를 신설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정개혁이 농어민의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어야 한다. 예컨대, 농어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준다든지 진정 뭔가 개혁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어떤 거창하고 그럴 들판 정책의 제시도 농어민들에게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정당한 숙원과제 하나 신속하게 해결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개혁의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정부정책을 믿고 영농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는가. 일례로 지난 1981년부터 지금까지 13년간에 걸친 양축농가의 오랜 숙원 정책 과제는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해 줄 것과 수입사료 원료에 대한 관세를 감면해 달라는 것이었으며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이 보낸 대정부 건의횟수만도 13년간 1백3건에 달했다. 또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갖가지 기괴한 구실을 들어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불행중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농어촌발전위원회(농발위)에서 농어촌 발전을 위한 분야별 대책(안)을 발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잔뜩 기대를 갖게 하는 내용들로 짜여져 있으며 그 기본골격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대책, 농어촌 산업진흥과 생활권 개발대책, 농어민 복지증진방안, 농정추진체계의 전환 등이다.

그 내용중 축산부문과 관련된 주요 정책건의 내용을 보면 첫째, 생산비 절감방안으로서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사료곡물에 대한 관세를 무세화하며, 축산전업농, 축산단지, 계열화업체에 대한 지원자금의 현실화 및 금리인하로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우량 송아지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한우 개량 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계열화의 내실화로 사육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생산비 인하를 유도하고, 종축개량 및 개량종축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일정수 이상의 전업적 축산농가가 단지를 조성할 경우 공동 구·판매, 공동방역, 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 자금지원으로 축산단지조성을 확대하며, 동시에 가족 노동력 중심의 전업양축농가를 육성하여 사육기술과 입지를 확보한 농가에 대해 축사 등 기본시설과 장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경영규모화를 통한 수입축산물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송아지 가격안정제를 실시하며, 대도시의 생축 반입 및 도축을 금지하고, 도축장의 산지이전에 필요한 토지제공 및 현대화 지원, 양축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의 유통참여(도시직판장 등) 지원과 이를 통한 수입 축산물과의 품질차별화 촉진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며, 냉장 부분육을 중심으로 육류유통제도를 개선하며 부정육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유통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해야 한다.

넷째, 축산에 의한 환경오염문제 해결과 지역 향상,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며,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관계법 개정과 기술개발은 물론 가축분뇨 공동 처리장 시설자금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소규모 양축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는 등의 시책이 필요하며, 유해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전문검역인력의 확충과 검역장비 현대화, 시설확충지원 강화, 전염병 발생정보 수집 및 분석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생산자 중심의 도축장, 부분육 가공공장 등의 건설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 강화해야 하고, 농어민의 농림수산물 가공산업 참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설규모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농림수산물 가공업의 인허가와 육성업무는 농림수산부가 담당토록 해야 한다.

여섯째, UR 동식물검역에 관한 협상의 타결에 따라 검역기준을 국제기준으로 높이고, 검역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식물검역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검역의 과학화 및 객관화를 위하여 철저한 위험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을 축적해야 하며, 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입량 급증에 대비하여 전문인력육성을 위한 기술훈련의 확대, 품목별 전문검역시설 및 정밀검사장비 보강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검역정보시스템 개발로 검역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지검역에 중점을 둔 예방검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생산자단체의 유통기능과 수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종별 전문조합을 육성하며 광역조직화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을 조기에 제정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을 자유화하되, 조합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요건을 법에 명문화하고, 지역여건과 영농구조를 고려, 현행 지역조합과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키되 신설되는 전문조합은 경제사업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신용사업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여덟째, 국제환경협약의 강화에 부응하는 환경보전형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축산부문에서는 톱밥발효축사의 건설과 자동화 지원을 통한 순환형 축산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대규모 축산단지에 공동퇴비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료관리법 중 미생물제품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 또는 신고제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영세축산농가의 밀집지역 및 주요 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축산분뇨정화시설 설치농가에 대한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축산단지화를 촉진하고 단지내의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농발위의 축산부문 건의안은 상당히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되며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

问题是 이러한 농발위의 건의안이 얼마나 정책으로 입안되고 시행되느냐가 중요하다 하겠다. 모처럼 내놓은 농발위의 건의안은 개혁차원에서, 그리고 농축산업의 본질적 가치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문민정부의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

□ 필자약력

- 중앙대학교 농업경제학과
- 미국 미시시피주립대 농업경제학 박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현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부교수